

보도시점 : 2023. 3. 30.(목) 11:00 이후(3.31.(금) 조간) / 배포 : 2023. 3. 30.(목)

## 지입제 피해사례 총 790건 접수

- 행정처분 검토요청 212건, 세무조사 검토요청 97건, 수사의뢰 32건 예정 -
- 신고 유형 중 ‘번호판 사용료 요구·수취’가 53.7%(424건)으로 가장 많아 -
- 53개 운송사 현장조사 결과, 피해신고 사실 및 추가 위법행위 등 확인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월 20일(월)부터 3월 17일(금)까지 26일간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90건(1일 평균 30.4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 접수된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 수취한 경우(424건, 53.7%)’였으며, 이 외에 ‘지입료를 받고 일감을 미제공한 경우(113건, 14.3%)’, ‘화물차량을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동의비용으로 ‘도장값’을 수취하는 경우(33건, 4.2%)’ 등이 뒤를 이었다.

○ 또한 차주의 피해 외에도 운송사의 불법증차\* 신고도 다수 접수되었다. 이를 검토한 결과 불법증차 의심차량이 76대 확인되어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화물차 수급관리를 위한 공급기준에 맞지 않게 차량이 등록된 경우로, 예컨대 지자체 담당자를 매수 또는 기망하여 공급이 제한된 화물차량을 허가등록하는 방식으로 발생

□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3월 2일(목)부터 3월 24일(금)까지 피해신고가 접수되었거나 위법행위의 정황이 있는 운송업체 53개사에 대해 사실관계 및 운영현황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 ① 위법행위 확인 결과

- 조사 결과, 변호판 사용료 등 금전을 수취한 경우, 위수탁 계약서에 지입료 액수나 계약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회사 직원의 개인 명의 계좌를 통해 금전을 받은 경우 등 기존 신고를 통해 접수된 피해 사실을 일부 확인하였다.
  - 특히, 운송사가 불법증차로 인해 지자체로부터 감차 처분을 받아 해당 화물차주가 정당하게 명의이전을 요구했음에도, 운송사가 명의 이전의 대가로 화물차주에게 1,500만원을 요구했음을 인정한 경우도 있었다.
- 또한, 운송사가 기사를 고용하여 직접 운영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차량(친환경 화물차)을 임대 방식으로 편법 운영을 하거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된 장소가 아닌 곳에 실제 사무실을 운영한 경우 등 추가적인 위법행위도 확인되었다.

## ② 운영현황 확인 결과

- 피해신고가 접수되거나 위법행위의 정황이 있어 이번 조사대상이 된 53개사의 업체당 평균 직원수는 4.3명인 반면, 평균 운송차량 대수는 91.3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일한 대표자가 다른 운송법인도 보유한 경우가 35개사(66%)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국토교통부는 접수된 피해사례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지자체에 212건에 대한 행정처분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 아울러, 각종 대금을 운송사업자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의 계좌나 현금으로 요구하거나, 화물차주 변호판을 강탈하거나 계약서 변경을 강요한 사례 등도 접수되어 국세청에 탈세 의심사례 97건을 세무조사 검토요청하고, 경찰청에 불법 의심사례 32건을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가 확인되는 경우 과소신고한 세금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추징될 수 있다.

< 주요 신고사례 및 조치계획 >

번호	신고내용	조치계획
신고 사례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옷돈, 일자리값(번호판 사용료) 등 각종 대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해줄 것을 요구</li> <li>■ 당초 광고내용과 달리 고정된 운송물량이 없어 금전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함. 과적을 강요하고,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든 업무를 배정하여 계약해지를 유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처분 요청</li> <li>☞ 세무조사 검토요청</li> <li>☞ 수사 의뢰 (사기)</li> </ul>
신고 사례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계약서에 노예계약과 다른없는 내용을 삽입하여 계약 강요를 종용하고, 서명하지 않으면 더 가혹한 내용을 추가한다고 겁박(집중 출하 시에는 18~20시간을 수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사 의뢰 (협박, 강요)</li> </ul>
신고 사례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수탁계약서를 차주에게 교부해주지 않고 눈으로만 열람을 허용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 사항을 기재하지 않음</li> <li>■ 부당한 내용을 첨가한 후 계약서 작성을 종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처분 요청</li> <li>☞ 수사 의뢰 (협박, 강요)</li> </ul>
신고 사례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약 3,000만원의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여, 운수회사 대표와 부자관계인 자의 통장으로 3번에 걸쳐 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처분 요청</li> <li>☞ 세무조사 검토 요청</li> </ul>
신고 사례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주에게 번호판 사용료와 대폐과정 발생비용을 요구하고, 현물출자자 미기재 민원을 제기한 기사에게는 계약해지 통보</li> <li>■ 각종 대금을 개인에게 이체하는 방식으로 탈세행위를 하고, 차주가 받아야 할 부가세 환급금을 수취 및 미반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처분 요청</li> <li>☞ 세무조사 검토 요청</li> </ul>

□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6일 당정협의를 통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입제 개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월 9일 발의(김정재 의원 대표 발의)되었다.

- 동 개정안에 따르면 지입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번호판 임대료(번호판 권리금 및 지입료)만 수취하던 일명 ‘지입전문회사’를 퇴출하기 위해 지입차주에게 최소한의 일감도 제공하지 않는 운송사의 차량은 감차하고, 해당 지입차주에게 개인운송사업을 허가하여 독립시킨다.

- 또한, 현재 지입 계약 시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던 것을 **차량의 실소유자인 지입차주 명의로 등록하도록 개선**하고, 번호판 사용료·대폐차 도장값·차량 명의이전 대가 등 일부 운송사의 차주에 대한 부당금전 요구가 담긴 계약 내용은 무효로 하며, 운송사업자 의무로도 규정하여 위반 시 차량 감차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이번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현장 조사를 통해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정상화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면서,
  - “표준운임제 도입과 지입제 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국회에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물류신고센터 운영과 지속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일부 **운송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물류정책관실 물류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근오 (044-201-3993)
		담당자	서기관 사무관	김병채 (044-201-3994) 유찬호 (044-201-3998)



#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 결과

\* '23.2.20.(월)~3.17.(금) 운영 (총 26일간)

총 790건  
접수

- ① 번호판 사용료 요구·수취(424건, 53.7%)
- ② 일감 미제공(113건, 14.3%)
- ③ 대폐차 도장값 요구 또는 수취(33건, 4.2%)
- ⋮



지자체  
행정처분 검토요청

212건

사업정지 등 처분

국세청  
세무조사 검토요청

97건

과세 및 가산세 추정

경찰청  
수사 의뢰

32건

강요·사기죄 등 적용